

요약

독일은 2016년 Solvency II 시행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함. 이에 따라 독일 감독 당국(BaFin)은 2024년 2분기부터 보험회사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권고함. 또한 BaFin은 2023년 개정된 Solvency II 지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넘어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위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사함

- 2016년 Solvency II¹⁾ 지침 도입에 따라 독일은 보험회사가 동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도모하는 방안을 보험감독법(VAG)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함
 - 독일은 유럽연합(EU)의 Solvency II 지침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험감독법(VAG) 제82조, 제351조 제352조를 통해 보험회사가 동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경과조치 방안을 마련함
 - 제82조에서 규정하는 변동성 조정은 신용스프레드(회사채-국채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조정하여 부채가 시장의 일시적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임
 - 제351조에서 규정하는 무위험 이자율 조정은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장기 부채를 평가할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무위험 이자율 곡선을 점진적으로(2016 ~ 2032년: 100% → 0%) 조정하는 조치임
 - 제352조 또한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2032년까지 책임준비금을 Solvency II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장기 고금리 계약 보유 비율이 높은 편인 독일 보험회사는 이를 적극 활용함
 -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2022년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345.0%, 598.1%로 나타나 경과조치가 지급여력비율에 미친 영향력은 253.0%로 분석되며 변동성 조정의 영향은 32.9%로 나타남
 - 총 81개 생명보험회사 중 68개 회사가 변동성 조정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54개 회사는 경과조치를 선택하였고, 무위험 이자율 조정을 선택한 보험회사는 없었음
- 독일 감독 당국 BaFin은 2024년 2분기를 기점으로 보험회사에 Solvency II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권고함²⁾

1) 유럽 연합은 15년(2001~2016년)간의 논의를 거쳐, 자산-부채 비율 기반의 자본 평가를 넘어, 정량 및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한 '3-Pillar (요구자본 산출 기준인 Pillar I,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Pillar II,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Pillar III)' 체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위험 프로필에 맞춰 자본을 조정하는 Solvency II를 도입함

2) GDV(2024), "Solvency II: Neuberechnung"

- BaFin은 2022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Solvency II 경과조치를 적용한 생명보험회사에게 경과조치 적용 이전 지급여력비율을 재산출하도록 처음으로 요구하였음
 -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과도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경과조치 없이 Solvency II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임
- 다만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2032년까지로, 자본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할 경우 보험회사는 경과조치를 이용한 지급여력비율을 재산출할 수 있음

〈표 1〉 독일 Top 5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2022년 말 기준)

(단위: %)

회사명	시장점유율	감독 지급여력비율 (A)	경과조치 제외 지급여력비율(B)	경과조치 영향(A-B)
Allianz Leben	23.5	415.9	289.4	126.5
R+V AG Leben	8.0	834.7	275.7	559.0
Generali Deutschland Leben	6.6	312.7	312.7	0
Debeka Leben	4.2	1013.2	224.4	788.8
Zurich Deutscher Herold Leben	3.3	562.5	328.1	234.4

자료: solvencyData, Ticker(지급여력비율); AXCO(2024),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Germany"(시장점유율)

- BaFin은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Solvency II 개정안³⁾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사함
 - Pillar 2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속가능성이 미치는 재무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⁴⁾, 두 가지 기후 변화 시나리오(기온 상승 2도 이상, 이하 기준)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3년 주기로 검토해야 함⁵⁾
 - 이와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BaFin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 기관이 동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임⁶⁾
 - BaFin은 개정 Solvency II 지침을 MaGO⁷⁾에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지속가능성 위험과 관련된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 신중성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제7차 MaRisk⁸⁾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위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ance Notice on Dealing with Sustainability Risks)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금융 기관이 지속가능성 위험을 위험 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함

3) Solvency II 개정안은 2023년 12월 최종안이 발표되었으며 회원국은 동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까지 자국법에 반영해야 함

4) EIOPA는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발표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위험 규제 기술 표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5) MILLIMAN(2024), "Amendments to the Solvency II Directive"

6) BaFin(2024), "Risks in BaFin's Focus"

7) 보험회사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감독법 최소 요구사항(Minimum Requirements under Supervisory Law on the System of Governance of Insurance Undertakings)의 약자로, Solvency II하 독일 보험회사의 내부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도모함

8) 위험 관리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Minimum Requirements for Risk Management)의 약자로, 독일은행과 금융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관리 기준을 설정한 지침임